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택시 내 칸막이벽시설 설치 재정지원 근거 신설 등 〉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727호)

2024. 1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2204727)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택시 내 칸막이벽시설 설치·개선 재정지원 근거 신설 등 (안 제50조제2항제9호 및 제4항제3호 신설, 안 제52조의2 신설) ...	2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220472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득구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16.
3. 회 부 일 : 2024. 10.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나 버스 등에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벽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다만, 국토교통부령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등에 한하여 칸막이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는 버스보다 공간이 협소한 만큼 각종 범죄나 전염병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칸막이벽시설이 더 크게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칸막이벽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건강과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택시 내 칸막이벽시설 설치·개선 재정지원 근거 신설 등(안 제 50조제2항제9호 및 제4항제3호 신설, 안 제52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와 여객을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고, 시·도 및 국가가 칸막이벽시설 설치·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제9호 및 제4항제3호 신설, 안 제5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재정 지원) ① (생략)	제50조(재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u>9. 제52조의2에 따른 칸막이벽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④ -----

현행	개정안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2. (생략) <u><신설></u> ⑤ ~ ⑨ (생략) <u><신설></u>	----- ----- ----- -----. 1. 2. (현행과 같음) <u>3. 제52조의2에 따른 칸막이벽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u> ⑤ ~ ⑨ (현행과 같음) <u>제52조의2(칸막이벽시설의 설치 권장)</u>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와 여객을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제9호 및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시내버스 일반형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는 운전자 보호를 위한 칸막이벽시설(보호벽)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1),

그 밖에 택시 등에는 이러한 안전시설 설치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 ~ 2022년) 버스·택시 운전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²⁾에 해당하는 폭행 건수는 16,533건이며, 2022년에는 4,368건이 발생하여 2018년도(2,425건)에 비해 80%가 증가하였음.

< 연도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발생건수 등 통계 >

(단위 : 건, 전국 기준)

구분	5년평균	2018	2019	2020	2021	2022
발생건수 (검거건수)	3,307 (3,255)	2,425 (2,391)	2,587 (2,551)	2,894 (2,865)	4,259 (4,179)	4,368 (4,293)

*버스 또는 택시 등 구체적 운송수단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는 않음.

*자료 : 경찰청범죄통계 (KOSIS)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21조제1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4. 18.>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1) 노선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

차)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시내일반버스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최근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추행하는 사건 등 택시 차량 내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할 수 있는 칸막이벽 등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건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폭행사건 관련 뉴스 보도 현황 >

- “목 조르고 추행” 이번에 여성 택시기사 봉변 (JTBC, '24.6.)
- “맞아본 적 있나” 묻더니 “퍽” ...70대 택시기가 폭행 (MBN, '24.6.)
- “쓰레기 같은 게”...택시기사 폭행 “만취 50대” 경찰 부르자 “기억 안 나” (서울경제, '24.5.)
- 운전 중 택시기사를 ‘10여 차례’ 흉기 공격(채널A뉴스, '23.1.)
- “버스 안 LED가 왜 꺼졌느냐” 말하며 버스기사 폭행 (MBN '24.2)
- 버스기사 “카드 찍어요” 한 마디에 주먹 날렸다 (중앙일보, '24.3)

*자료 : 국토교통부

이처럼 운전자에 대한 폭행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데 비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까지 서울·경기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칸막이벽시설(보호격벽) 설치를 지원한 택시 수는 전국적으로 10,980대에 불과하여 지원대수가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설명임.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권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칸막이벽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택시 안전장치 설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국정과제로도 선정³⁾된 바 있으며, 최근 국토교통부가 택시운수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4.7.24.~8.2.)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90.6%가 칸막이 벽시설 설치를 희망하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비용부담으로 나타난 바 있음⁴⁾.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이를 희망하는 운수종사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시설 설치를 촉진함으로써 승객과의 시비, 폭력, 강도 등 위해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고 운전자 위협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교통사고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택시’ 차량 내 칸막이벽시설 설치 필요성이 더 크게 요구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안 제52조의2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국정과제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택시 칸막이 설치지원

4) 보호격벽 설치 미희망 이유 : 비용부담(27.2%), 후방시야(17.8%), 결재불편(16.2%), 활동제한(14.6%) 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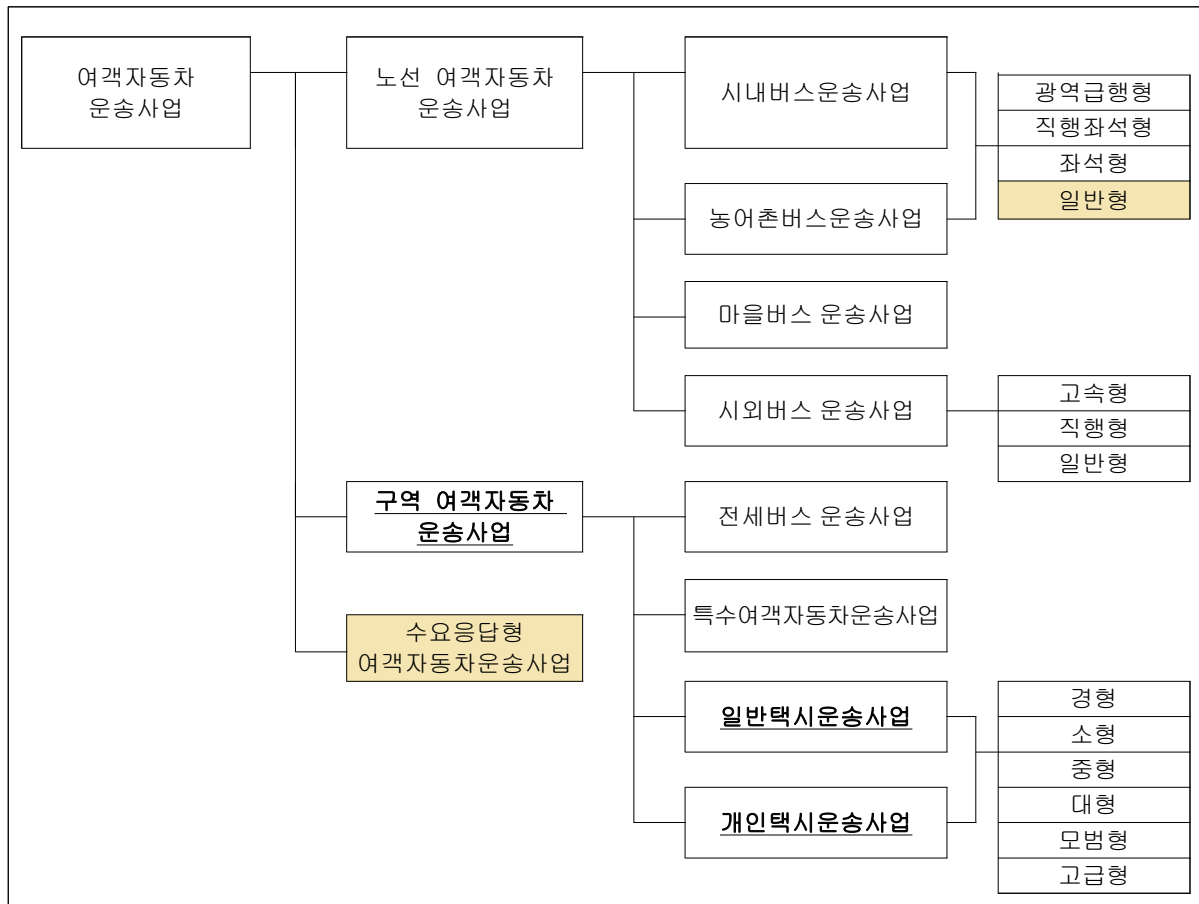
현행법 제3조제1항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따라,
①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
②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 및 개인 택시), ③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분됨.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 나.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체계도 >



*음영은 칸막이벽설치 의무화 대상, 밑줄친 굵은 글씨는 택시 운송사업

* 자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칸막이벽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시내버스 일반형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외의 다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개정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제안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택시’ 외에도 광역급행·직행 좌석·좌석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장레차량을 말함) 등이 모두 권장 대상에 해당함.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하는 경우, 안 제50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으로 칸막이벽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국가와 시·도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제안이유에서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택시’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안의 문구 그대로 전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칸막이벽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시내버스(일반형),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외 고속·시외·마을버스 및 전세 버스 등에서도 폭행에 노출될 수 있는 운전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권장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도 동 개정안과 유사하게 택시 칸막이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2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제2100621호)⁶⁾, 「택시운

6) 동 개정안과 유사하게 택시 격벽시설 등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교통법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2020.9.10.)결과 택시기사의 격벽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 버스 업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이유로 의결되지 않음.

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제212469호)⁷⁾이 발의되었으나 의결되지 않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둘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⁸⁾에서는 시내일반버스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운수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토교통부령 등으로 칸막이벽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52조의2는 칸막이벽시설 설치 권장 의무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두고 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9)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7)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칸막이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소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임기만료로 폐기됨.

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4. 18.>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1) 노선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

차)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시내일반버스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시·도지사임.

또한, 안 제50조제2항제9호와 안 제50조제4항제3호에 따라 재정지원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시·도가 되며 국가(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처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권자와 비용주체를 감안할 때, 체계·자구 측면에서 안 제52조의2 칸막이벽시설 설치 권장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다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넷째, 안 제52조의2는 ‘운수종사자¹⁰⁾와 여객을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벽시설’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택시 등의 운전자를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4조(시·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 중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한다. <신설 2015. 1. 28., 2016. 1. 6., 2024. 7. 2.>
- 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 ③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 있는 구조의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도, 시내버스(일반형)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칸막이벽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고 있음.

제안이유에서는 택시 내 공간이 협소하여 각종 범죄나 전염병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여객의 보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문구로만 놓고 볼 때 운수종사자만이 아니라 여객을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벽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바,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여객’을 제외하고 ‘운수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벽시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택시·버스 등 운수종사자의 보호 및 안전운송 등을 위해서는 칸막이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2024년도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의무적 설치보다는 자율적 설치 권장하되 비용지원 근거 신설과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권장의무 주체를 운송사업 면허권자와 재정지원 주체를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개정안은 운수종사자와 별도로 여객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호대상을 운수종사자로 한정하도록 수정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4